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 안 번 호	1805

제안년월일 : 2017년 4월 19일
제 안 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○ 서울시장이 제출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1720호)과 이상묵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1754호)을 일괄 심사한 결과,

○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통합·수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사유

○ 현행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에는 공원시설 이용료가 명시되어 있음. 현재 공원시설로 국궁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요금 규정이 없어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○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을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제24조에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함.

○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으나 부위원장을 위촉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원간(당연직, 임명직, 위촉직) 불평등을 유발하는 제한사항이므로 개정이 필요함.

○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의 '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'고 되어 있으나, 연임에 대한 횟수 제한이 없어 '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'로 개정하여 장기간 연임하지 않도록 개정함.

○ 또한, 맞춤법 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을 '심의'로 한정된 것을 '심의 또는 자문'으로 역할을 확대(안 제24조)

나. 도시공원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함
(안 제25조제2항)

다. 위원의 임기를 '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'로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기로 함 (안 제25조제4항)

라. 〔별표 2〕 공원시설 이용료에 국궁장 요금을 신설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신청하여야 한다.이 경우”을 “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”로 한다.

제24조의 제목 “(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)”를 “(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0조제1항”을 “법 제16조제4항, 법 제50조제1항”으로, “사항을 심의하기”를 “사항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”로, “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위촉직 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연임”을 “1회에 한하여 연임”으로 한다.

〔별표 2〕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〔별표 2〕의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 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제1항 관련)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공원별</th><th rowspan="2" colspan="2">종 별</th><th rowspan="2">사용기준</th><th colspan="2">금 액(원)</th><th rowspan="2">비 고</th></tr>
<tr><th>체육경기</th><th>기타행사</th></tr>
<tr><td rowspan="15">공 통</td><td colspan="2">잔디광장</td><td rowspan="2">1㎡당,
2시간</td><td colspan="2">20~40</td><td rowspan="9">◦ 토, 공휴일은 이용료 30% 가산
◦ 야간에는 이용료 30% 가산(토, 공휴일은 제외)
◦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
◦ 풋살경기장은 청소년 이용시 30% 할인, 어린이는 무료. (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% 이상일 때 적용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일반운동장(광장)</td><td>5~10</td><td>10~20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축 구 장</td><td rowspan="2">잔 디</td><td rowspan="4">1회 2시간</td><td>120,000~
156,000</td><td>300,000~
390,000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인조잔디</td><td>55,000~
82,500</td><td>110,000~
143,000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풋살경기장</td><td>10인용</td><td colspan="2">25,000~32,500</td></tr>
<tr><td>6인용</td><td colspan="2">15,000~19,500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테니스장</td><td>실 외</td><td>1면당, 2시간당</td><td colspan="2">8,000~16,000</td></tr>
<tr><td>실 내</td><td>1면당, 2시간당</td><td colspan="2">25,000~37,500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파크골프장</td><td>어 른 1회당
청소년 1회당
어린이 1회당</td><td colspan="2">4,000~6,000
3,000~4,000
2,000~3,000</td><td>◦ 평일 단체 이용시 30% 할인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파크골프장
물품대여료</td><td>클럽(1회당, 개당)</td><td colspan="2">1,000~2,000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2">야영장</td><td>야영장소 1회당</td><td colspan="2">10,000~30,000</td><td>◦ 입소일(1박2일 기준)이 공휴일이 아닌 월~목요일인 경우 20인(야영장소 5면) 이상 이용시 30% 할인</td></tr>
<tr><td>전기 1회당</td><td colspan="2">3,000~5,000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2">야영장 물품대여료</td><td>야영텐트 1회당</td><td colspan="2">5,000~20,000</td><td></td></tr>
<tr><td>1인용매트 1회당</td><td colspan="2">1,000~1,500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사진·영상
촬영녹화</td><td>최초 1시간
초과시간당</td><td colspan="2">13,000~19,500
6,500~13,000</td><td>◦ 영리행위에 한함. 다만,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.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공원이용
프로그램참가비</td><td>1회당 (1일당)</td><td colspan="2">1,000~20,000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강의실 대여료</td><td>100㎡당, 1시간당</td><td colspan="2">20,000~30,000</td><td>◦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.
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
◦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야외무대</td><td>2시간당</td><td colspan="2">100,000~150,000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청소년 체험의 숲</td><td>어 른 1회당
청소년 1회당
어린이 1회당</td><td colspan="2">8,000~12,000
5,000~8,000
3,000~5,000</td><td>◦ 평일 단체 이용시 30% 할인
◦ 키 140cm 이상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2">국궁장</td><td>1일(3시간)</td><td colspan="2">2,000~4,000</td><td rowspan="2">◦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% 할인

◦ 청소년·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.</td></tr>
<tr><td>1개월</td><td colspan="2">20,000~40,000</td></tr>
<tr><td>남 산
공 원</td><td colspan="2">차량통행료</td><td>승합자동차(16인승 이상)
승용자동차,
승합자동차
(15인승이하)</td><td colspan="2">3,000 ~ 6,000
2,000 ~ 4,000</td><td>◦ 순환버스·시티투어버스·긴급 및 통행허가차량·장애인콜택시·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은 무료</td></tr>
<tr><td>서 울
대공원</td><td colspan="2">서울대공원
캠핑장</td><td>어 른 1회당
청소년 1회당
어린이 1회당</td><td colspan="2">2,000 ~ 4,000
1,500 ~ 3,000
1,000 ~ 2,000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점용허가의 기간) ① ~ ② (생 략) ③ ---------- ------- 한다.이 경우 --------- ----------.	제13조(점용허가의 기간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 ------- 한다. 이 경우 -------- ----------.
제24조(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)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제24조(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) 법 제16조제4항, 제50조제1항 ---- 사항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---------- ----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----------.
1.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조성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	<삭 제>
2. 그 밖에 공원에 관한 중요사항	<삭 제>
제2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 략)	제2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행정(2)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.	② ---------- ---------- 위원 ---------- 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3항제2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	④ ---------- ----- 1회에 한하여 연임-------.
⑤ ~ ⑥ (생 략)	⑤ ~ ⑥ (현행과 같음)